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98. 9. 1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98. 10. 23
- 라. 예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일자
 - 상 정 : 98. 11. 13
 - 심사 및 의결 : 98. 11. 13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97년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요청
 - 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 요청

나. 주요골자

-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한 것임

다.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 산 액		
			세 입	세 출	임 여 금
계	577,128,093	755,525,918	751,404,118	502,183,612	249,220,506
일반회계	322,289,842	427,887,019	422,868,596	299,996,895	122,871,701
특별회계	254,838,251	327,638,899	328,535,522	202,186,717	126,348,805
공기업특별회계	214,541,552	280,245,947	289,344,832	183,619,384	105,725,448
기타특별회계	40,296,699	47,392,952	39,190,690	18,567,333	20,623,357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부천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만수

위원 이원재

위원 김선구

위원 정길영

위원 박해울

<총 평>

- 부천시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유리한 편이었으나, 중동신도시 개발의 완료등으로 인하여 재정호황기를 벗어났으며, IMF시대에 진입하여 지방세의 체납 및 부동산경기의 불황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입정수 예산액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정수 증대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편성시에서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함으로써 낭비적 예산편성 및 불용예산을 줄이고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96년 18,986백만원에서 97년 36,771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은 이후 IMF상황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통한 해결대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잔고하락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자금운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분야의 전문적인 진단으로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민적 동의에 입각한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경직성 경비와 보조금 예산에 있어서 시민적 필요에 기초한 제로베이스 예산운용방식을 철저히 도입하여 보조금의 일률적 배정이나 전년대비 일정률의 증액편성 관행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의 하드웨어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의 부실로 잠자는 시설은 없는지 점검하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Operating System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활용이 이뤄지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독일의 재정학자 골드 사이어는 “예산은 일체의 화장을 벗겨 놓은 정부활동의 골격”이라 했고, 미국의 슈페터는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고 했으나, 우리의 예산 및 결산서는 아무리 열심히 뒤져 보아도 각 항목은 나열되어 있지만 시의 예산과 재정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즉 “예산의 명료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산과 결산, 재정회계의 형식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은 시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내용과 그 수행계획을 엄밀하게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기에 보통의 시의원이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하며 그것이 재정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식부기방식 예산·재정표시방법에서 복식부기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첫째, 정책결정에 필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둘째, 재정정보의 시민공개를 실질화할 수 있으며 셋째, 성과평가가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누차 지적된 것이지만 재정회계분야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의 양성정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이의 보완을 위해 시의 재정운용분야와 회계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과 감사를 위해 자문(고문)회계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1.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세입예산액 577,128,09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1,404,118,65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755,525,918,030원(전년도 이월금 178,397,825,03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02,183,612,61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49,220,506,04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
금 총액 249,220,506,047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44,098,585,330원
 - 사고이월 43,210,813,420원
 - 계속비이월 80,245,902,240원
 - 보조금 집행잔액 713,191,0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0,952,014,007원이
다.

2. 1997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322,289,84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2,868,596,163원이며
- 세출예산액 427,887,018,920원(전년도 이월금 105,597,176,9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99,996,895,2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2,871,700,90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
금 총액 122,871,700,903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2,223,893,250원
 - 사고이월 5,214,131,060원
 - 계속비이월 79,596,374,610원
 - 보조금 집행잔액 629,38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207,919,983원이
다.

3.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가. 총괄결산상황은

- 세입예산액 254,838,25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535,522,49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27,638,899,110원(전년도 이월금 72,800,648,1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02,186,717,35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26,348,805,14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126,348,805,144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21,874,692,080원
 - 사고이월 37,996,682,360원
 - 계속비이월 649,527,630원
 - 보조금 집행잔액 83,809,0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744,094,024원이다.

4.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 세입예산액 40,296,69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90,690,41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7,392,951,860원(전년도 이월금 7,096,252,86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8,567,332,6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0,623,357,73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20,623,357,734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454,138,910원
 - 사고이월 1,529,461,83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9,483,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10,273,174원이다.

1)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53,9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029,89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3,93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3,011,46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2,018,4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2,018,439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18,439원이다.

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6,298,37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87,117,36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298,371,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257,633,54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29,483,82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9,483,82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29,483,8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0원이다.

3)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98,160,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2,063,315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8,160,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0,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92,063,315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92,063,315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2,063,315원이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3,813,94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49,844,174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186,840,000원(전년도 이월금 5,372,897,00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693,603,9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10,256,240,27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0,256,240,274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96,850,000원
 - 사고이월 373,072,01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86,318,264원이다.

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93,80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5,854,270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93,807,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41,000,0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464,854,2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64,854,27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4,854,270원이다.

6) 교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466,10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48,023,797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582,647,540원(전년도 이월금 116,545,54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6,529,681,10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3,918,342,6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918,342,697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257,288,910원
- 사고이월 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61,053,787원이다.

7)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072,38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12,757,599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1,679,195,320원(전년도 이월금 1,606,810,32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782,402,680원이며

○ 그 차인잔액은 5,730,354,9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730,354,919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0원
- 사고이월 1,156,389,82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73,965,099원이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별책) 3개 공기업특별회계 외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회 계 명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 월 액					
				계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155,582,834,150	145,092,024,208	105,510,444,360	39,581,579,848	73,500,000	25,825,444,030			13,682,635,818
상 수 도 특별회계	66,066,489,380	94,260,992,082	37,690,352,060	56,570,640,022	15,004,236,170	7,796,486,500	649,527,630	54,325,230	33,066,064,492
하 수 도 특별회계	58,596,623,720	49,991,815,790	40,418,588,250	9,573,227,540	5,342,817,000	2,045,290,000			1,385,120,540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㉔	결 산						이 월 액 명 세 서				
			세입㉕	㉖/㉔	세출㉗	㉘/㉔	이월액㉙	㉚/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755,525,918	751,404,118	99.4	502,183,612	66.4	249,220,506	32.9	44,098,586	43,210,814	80,245,902	713,190	80,952,014
일반회계	계	427,887,019	422,868,596	98.8	299,996,895	70.1	122,871,701	28.7	22,223,894	5,214,131	79,596,375	629,382	15,207,919
특별회계	계	327,638,899	328,535,522	100.3	202,186,717	61.7	126,348,805	38.5	21,874,692	37,996,683	649,527	83,808	65,744,095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280,245,947	289,344,832	103.2	183,619,384	65.5	105,725,448	37.7	20,420,553	36,467,221	649,527	54,325	48,133,822
	공영개발사업	155,582,834	145,092,024	93.2	105,510,444	67.8	39,581,580	25.4	73,500	25,825,444			13,682,636
	상수도사업	66,066,489	94,260,992	142.7	37,690,352	57	56,570,640	85.6	15,004,236	7,796,487	649,527	54,325	33,066,065
	하수도사업	58,596,624	49,991,816	85.3	40,418,588	70	9,573,228	16.3	5,342,817	2,845,290			1,385,121
기타특별회계	소계	47,392,952	39,190,690	82.7	18,567,333	39.1	20,623,357	43.5	1,454,139	1,529,462		29,483	17,610,273
	주택사업	53,931	45,030	83.4	13,011	24.1	32,019	59.3					32,019
	의료보험기금사업	6,298,371	6,287,117	99.8	6,257,634	99.3	29,483	0.4				29,483	
	새마을소득사업	198,160	242,063	122.1	50,000	25.2	192,063	96.9					192,063
	토지구획정리사업	19,186,840	11,949,844	62.3	1,693,604	8.8	10,256,240	53.4	196,850	373,072			9,686,318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용사업	393,807	705,854	179.2	241,000	61.2	464,854	118					464,854
	교통사업	9,582,648	10,448,024	109	6,529,681	68.1	3,918,343	40.9	1,257,289				2,661,054
경영수입사업	11,679,195	9,512,758	81.4	3,782,403	32.3	5,730,355	49		1,156,390			4,573,965	

전년도 결산대비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㉑	세 입			세 출			이 월 액 명 세 서					
		결산액㉒	증 감	㉒/㉑	결산액㉓	증 감	㉓/㉑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당해년도	755,525,918	751,404,118	4,121,800	502,183,612	253,342,306		250,856,834	44,098,586	43,210,814	80,245,902	713,190	80,952,014
	전 년 도	646,761,670	677,454,892	△30,693,222	398,049,710	248,711,960		279,405,182	45,558,097	23,936,060	87,158,668	617,886	122,134,471
	증 감	108,764,248	73,949,226	34,815,022	104,133,902	4,630,346							
일 반 회 계	당해년도	427,887,019	422,868,596	5,018,423	299,996,895	127,890,124		122,871,701	22,223,894	5,214,131	79,596,375	629,382	15,207,919
	전 년 도	384,841,263	390,547,776	△5,706,513	241,029,731	143,811,532		149,518,045	16,247,133	7,013,442	81,636,602	394,327	44,226,541
	증 감	43,045,756	32,320,820	10,724,936	58,967,164	△15,921,40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당해년도	280,245,947	289,344,832	△9,098,885	183,619,384	96,626,563		107,518,463	20,420,553	36,467,221	649,527	54,325	48,133,822
	전 년 도	230,143,403	252,033,694	21,890,291	146,368,306	83,775,097		105,665,388	22,331,257	16,806,073	5,522,066	199,853	60,806,139
	증 감	50,102,544	37,311,138	12,791,406	37,251,078	12,851,466							
기 타 특 별 회 계	당해년도	47,392,952	39,190,690	8,202,262	18,567,333	28,825,619		20,466,670	1,454,139	1,529,462		29,483	17,610,273
	전 년 도	31,777,044	34,873,422	△3,096,418	10,651,673	21,125,331		24,221,749	6,979,707	116,545		23,706	17,101,791
	증 감	15,615,948	4,317,268	11,298,680	7,915,660	7,700,288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단위 : 천원)

재원별	구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㉑	결산액 ㉒	증 감 ㉑ - ㉒	예산현액 ㉓	결산액 ㉔	증 감 ㉓ - ㉔	예산현액 ㉕	결산액 ㉖	증 감 ㉕ - ㉖
세	계	753,214,945	751,404,118	1,810,827	427,299,402	422,868,596	4,430,806	325,915,543	328,535,522	△2,619,979
	지방세	132,690,000	132,755,922	△65,922	132,690,000	132,755,922	△65,922	0	0	0
	세외수입	542,003,705	546,933,740	△4,930,035	245,428,827	247,268,883	△1,840,056	296,574,878	299,664,857	△3,089,979
	경상적세외수입	135,966,561	129,982,816	5,983,745	86,840,117	88,399,601	△1,559,484	49,126,444	41,583,215	7,543,229
	임시적세외수입	406,037,144	416,950,924	△10,913,780	158,588,710	158,869,282	△280,572	247,448,434	258,081,642	△10,633,208
	지방교부세	1,600,000	1,600,000	0	1,600,000	1,600,000	0	0	0	0
	증액교부금	0	0	0	0	0	0	0	0	0
	지방양여금	10,037,777	9,118,445	919,332	4,885,777	3,966,445	919,332	5,152,000	5,152,000	0
	조정교부금	0	0	0	0	0	0	0	0	0
	보조금	34,983,463	34,096,011	887,452	24,794,798	24,377,346	417,452	10,188,665	9,718,665	470,000
입	국고보조금	17,509,643	17,174,963	334,680	12,546,057	12,211,377	334,680	4,963,586	4,963,586	0
	시·도·비보조금	17,473,820	16,921,048	552,772	12,248,741	12,165,960	82,772	5,225,079	4,755,079	470,000
	지방채	31,900,000	26,900,000	5,000,000	17,900,000	12,900,000	5,000,000	14,000,000	14,000,000	0
세	계	755,525,918	502,183,612	253,342,306	427,887,019	299,996,895	127,890,124	327,638,899	202,186,717	125,452,182
	인건비	56,614,043	54,272,344	2,341,699	50,223,443	48,520,668	1,702,775	6,390,600	5,751,676	638,924
	물건비	64,335,666	58,055,827	6,279,839	39,680,488	35,024,498	4,655,990	24,655,178	23,031,329	1,623,849
	이전경비	79,349,311	76,037,242	3,312,069	54,297,508	51,401,721	2,895,787	25,051,803	24,635,521	416,282
	자본지출	458,395,464	240,686,102	217,709,362	260,354,678	142,140,602	118,214,076	198,040,786	98,545,500	99,495,286
	음자및출자	1,540,000	1,291,000	249,000	1,000,000	1,000,000	0	540,000	291,000	249,000
	보전재원	53,781,796	53,772,549	9,247	4,368,200	4,368,200	0	49,413,596	49,404,349	9,247
합	내부거래	17,437,568	17,144,870	292,698	17,143,189	17,143,103	86	294,379	1,767	292,612
	예비비및기타	24,072,070	923,678	23,148,392	819,513	398,103	421,410	23,252,557	525,575	22,726,982

세입분야 결산검사 검토사항

□ 개 요

○ 97년 세입 구조를 보면 일반회계가 56%, 특별회계가 44%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과거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편입할 계획이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시 총 세입 중 일반회계의 비중이 약 76% 정도로 증가할 것이며, 그만큼 효율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입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수 납 액	구 성 비 (%)		
			97년	96년	95년
일반회계	지 방 세	132,756	17.67	18.78	17.35
	세 외 수 입	247,269	32.91	34.67	33
	기 타	42,843	5.70	4.20	6.45
	합 계	422,868	56.28	57.65	56.8
특별회계	공 영 개 발	145,092	19.31	21.50	28.3
	상 수 도 공 기 업	94,261	12.54	11.61	10.6
	기 타	89,183	11.87	9.24	4.3
	합 계	328,536	43.72	42.35	43.2
합 계		751,404	100	100	100

○ 수납액에 기준한 세입은 96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94년 이래 4년 간은 계속 세입 규모가 증대됨으로써 시 재정 운용에 큰 애로가 없었으나 98. 회계년도는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니 재정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연도별 세입 추세(수입액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97.	96.	95.	94.	증 감 륜 (%)		
					97-96	96-95	95-94
일반회계	4,229	3,905	3,613	3,171	8.3	8.1	12.2
특별회계	3,285	2,870	2,743	3,158	14.5	4.6	△13.1
합 계	7,514	6,775	6,356	6,329	10.9	6.6	0.4

○ 징수 실적을 전년도(96년)와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결손처분의 경우 전년 대비 200%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증대(약 10%)에 따라 미수납액의 증대는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지나친 증가는 불완전한 부과에 따른 민원문제와 징수기술과 노력의 부족을 암시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97.	96.	증 감 액	증감률(%)
징 수 결 정 액	4,514	4,116	398	9.7
수 납 액	4,229	3,905	324	8.3
미 수 납 액	285	210	75	35.7
결 손 처 분 액	9	3	6	200
이 월 액	276	207	69	33.3

○ 과거 5년 간의 징수실적 추이를 보면 수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결손처분보다는 이월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미수납액의 구조와 체납자 현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정리가 요청됩니다.

(단위 : %)

구 분	97년	96년	95년	94년	93년	전년도대비증가율			
						97.	96.	95.	94.
수납률									
수납액									
징수결정액	93.7	94.9	95.9	97.2	97	△1.2	△1	△1.3	0.2
결손율									
결손처리율									
미수납액	3.3	1.3	3.3	2.9	11	2	△2	0.4	△8.1
이월률									
이월액									
미수납액	6.1	5.0	4	2.7	2.7	1.1	1	1.3	0

1. 재정상태 및 그 운영성과에 대한 파악과 활용이 부실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의 세입·세출결산에는 기금과 채권, 채무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시 재산과 부채 현황의 파악이 매우 부실하며 시정예의 활용 역시 부실합니다.

○ 특히 경기도 또는 타기관에 출연한 출연금의 경우에는 일부만이 기금 결산에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출연금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천시의 재산인 출연금 누계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단지 당해 기관에서 보내 주는 출연금 현재액 통보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황과 앞으로 상환해야만 하는 부채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일목요연하게 집계·정리하여 각종 시정활동과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시의 재정상 제약조건을 무시한 채 단순히 당해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온 셈이 되는 것입니다.

○ 이는 과거 4년 간의 흑자재정기간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표출하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재정기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세입의 증대와 세출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현재의 재정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 복식부기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 현재의 단식부기 방식으로는

① 특정 시점 현재 시의 재정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활용할 수 없습니다.

② 몇 가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결과치 역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단순한 합계치이므로 그 정확성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③ 즉, 단식부기하에서는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단순집계치에 의존해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매우 비과학적입니다.

④ 대개 당해년도에 중점하여 회계가 종료되므로 연도간 이월되거나 누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의 파악과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복식부기의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① 특정 시점 현재 시의 재정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자산·부채 등의 현황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현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는 그 정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② 연도간, 항목간, 그리고 부분과 전체현황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수립 및 심의 그리고 사업시행 등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③ 특정한 사업의 시행이 시 전체의 자산, 부채 등 가용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제약을 판단할 수 있어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시민의 이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정공개의 효과가 우수합니다.

⑤ 집행부가 언제나 시 제정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총체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기술적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하나의 활동이 그 조직에 미치는 금전적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기록하고 집계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기록하여 집계할 것인가의 기술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영리기업은 복식부기가 적절하고 비영리기업과 행정기관은 단식부기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단지 수치를 기록하고 과목별로 집계해 가는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예·결산서의 작성과 활용에 있어 기능별로 분류된 결산서의 보완이 요청됩니다. 현행의 사업별 구분에 근간을 두고 있는 장·관·항·목의 구분으로는 예산의 적절한 심의와 결산의 효과적 분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라도 세입과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 집계하여 총체적 입장에서 시정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97년의 세입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1.	세정활동에 의한 수입(시세 및 도세교부금 등)	1,952	46.2
2.	사업운영에 의한 수입(사용료, 수수료 등)	131	3.1
3.	행정통제에 의한 수입(과태료 등)	32	0.8
4.	재산운용에 의한 수입(임대, 이자소득 등)	138	3.3
5.	상급관서보고에 의한 수입(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300	7.1
6.	기타(잡수입, 지방채, 이월액 등)	1,676	39.5
합	계	4,229	100

○ 97년의 세출견산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구성비(%)
1. 인력운영비(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630	21.0
2. 사업운영비(소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42	4.7
3. 기관운영비(위원회운영, 관서당경비 등)	32	1.1
4. 시설관리비(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54	1.8
5. 대외지원비(보상금, 타기관지원 등)	650	21.7
6. 재정운영비(지급이자 등)	17	0.6
7. 연구개발비	9	0.3
8. 기타(자산취득, 채무상환, 출연금 등 투자항목)	1,466	48.9
합계	4,229	100

○ 97년 부천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복식부기시스템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보면 시정운영의 성과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97년말 현재 시의 재산상태는 '재정상태표'에 나타나 있는데 시의 총 재산은 1조 3,500억원 정도이며, 이 중 단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1,537억이며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이 1조 1,955억 정도입니다. 시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하여 약 366억 정도이며 1조 3,126억이 우리 시에 귀속되는 자본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현재 시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현황을 집계한 것이므로 그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97년 시의 수입과 지출은 '시정수지계산서'(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 기능)에 나타나 있는데 시정수입은 세정수입과 사업수입, 행정수입, 재산운용수입,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인력운영에 관련된 인력운영비와 사업운영비, 위원회나 부서운영에 관련한 기관운영비,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관리비, 그리고 보상금, 기타 대민보조 등 지원비, 지급이자의 재정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2,303억이며 시설투자 및 채무상환 등과 이월을 제외한 순지출은 1,543억이 됩니다. 따라서 시가 97년 수입을 징수하여 정상운영에 사용한 비용을 제하면 769억의 잉여가 발생했고 이를 당기 투자비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 시는 당기 잉여금 769억과 전년도 이월 1,497억으로 토지매입과 시설투자 등에 1,200여 억원을 사용하고 채무상환과 진출금 등에 242억 사용하여 98년도로 1,222억을 이월하였습니다.
- 시의 97년 수입하고 지출한 자금의 내역은 '시정자금흐름표'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1997년 12월 31일 현재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537)
(1) 당 좌 자 산		(1,537)
1. 현금과 예금		7
2. 기타예금		1,061
3. 유가증권		17
4. 용익물권		75
5. 미수납시세	299	
(결손충당금)	(8)	291
6. 미수납세외수입	27	
(결손충당금)	(1)	26
7. 미수납 도세 교부금		60
(2) 제 고 자 산		-
II. 고 정 자 산		(11,955)
(1) 투 자 자 산		(378)
1. 정 기 예 금		150
2. 정 기 적 금		98
3. 출 연 금		130
(2) 유 형 자 산		(11,573)
1. 토 지		9,422
2. 건 물		1,909
3. 공 작 물		24
4. 임 목 축		131
5. 차량운반구		30
6. 기 타 물 품		57
(3) 무 형 자 산		(41)
1. 무체재산권		41
자 산 총 계		13,492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부 채		
I. 유 동 부 채		(49)
1. 국·도비 반납액		6
2. 미지급비용		43
II. 고 정 부 채		(317)
1. 지방채		317
부 채 총 계		366
자 본		
I. 자 본 금		(11,604)
II. 자본잉여금		(300)
1. 교 부 세		16
2. 국·도비 보조금		244
3. 양 여 금		40
III. 시정잉여금		(1,222)
1. 이월사업비		1,070
2. 순세계잉여금		152
자 본 총 계		13,12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492

시정수지계산서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I. 시정 수입액		2,303
(1) 세정 수입	(1,952)	
1. 시세수입	1,328	
2. 도세교부금	624	
(2) 사업 수입	(131)	
1. 사용료 수입	16	
2. 수수료 수입	111	
3. 사업장 수입	4	
(3) 행정 수입	(32)	
1. 부담금	9	
2. 과태료	23	
(4) 재산운용수입	(138)	
1. 임대소득	6	
2. 이자소득	123	
3. 재산매각수입	9	
(5) 잡수입	(50)	
II. 시정 운영비		1,534
(1) 인력운영비	(630)	
1. 인건비	365	
2. 일용임금	125	
3. 복리후생비	140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2) 사업운영비	(142)	
1. 사무용품비	49	
2. 소모품비	25	
3. 여비교통비	21	
4. 업무추진비	47	
(3) 기관운영비	(32)	
1. 위원회운영비	4	
2. 부서운영비	21	
3. 의회비	7	
(4) 시설관리비	(54)	
1. 제세공과금	32	
2. 광열비	2	
3. 지급임차료	9	
4. 수선유지비	11	
(5) 지원비	(650)	
1. 대민지원비	467	
2. 포상금	1	
3. 배상금	3	
4. 타기관지원비	179	
(6) 재정운영비	(17)	
1. 지급이자	17	
(7) 연구개발비	(9)	
Ⅲ. 시정운영임여금		769

잉여금 변동 계산서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I. 사용전 시정 잉여금		2,266
1. 전년도 이월 잉여금	1,497	
2. 당기 시정 잉여금	769	
II. 당기 잉여금 사용액		(1,044)
		1,222
III. 차년도 이월 잉여금		
1. 이월사업비		1,070
2. 순세계잉여금		152

시정자금흐름표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부천시(일반회계)

(단위 : 억원)

과 목	1997년 당기	
	금	액
I. 시정운영상의 자금흐름		760
1. 시정운영 잉여금	769	
2. 조 정 사 항	(9)	
자산매각수입	9	
II. 투자활동에 의한 자금 흐름		(1,215)
1. 자산매각에 의한 자금유입	9	
2. 시설투자에 의한 자금사용	(1,224)	
토 지 매 입	213	
시 설 투 자	945	
자 산 취 득	44	
물 품 구 매	22	
III.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흐름		187
1.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유입	429	
지 방 채 발 행	129	
국·도비 보조금 수령	244	
교부세 및 양여금	56	
2.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사용	(242)	
대 여 금	10	
채 무 상 환	44	
전 출 금	161	
적 립 금	10	
국·도비 반납	4	
출 연 금 지 금	13	
IV. 순자금 수지액		(268)

2. 행정절차 복잡성에 따른 업무비 효율이 심각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의 자금배정은 세목을 지정하여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반드시 '배정내 사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 또는 동에 여유자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세목의 자금을 다시 내려주고, 불필요한 세목의 자금은 회수하는 2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당 부서의 세목의 많은 경우에는 각각의 세목별로 자금여유를 갖추다 보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현업부서에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는 자금운용의 여지를 크게 제한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금의 '배정내 사용' 원칙과 현업부서의 '여유자금 통제'라는 2가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배정과 회수가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실제로 예금계좌의 이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업부서의 잉여자금이 불필요하게 증대되어 시 전체의 입장에서는 자금이 불필요하게 사장되고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그 이외에도 세입분야에서 수납의 확인을 위한 시금고 일계와 영수필통지서의 수작업집계일계, 그리고 전산 관독에 의한 일계를 대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부의 기록확인을 위해 세외수입의 영수필 통지서 일계를 작성하면서 시금고가 보내준 지방세의 시금고 일계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 불필요한 2중 작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사용실적이 없는 전산징수부를 매월 전산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역시 불필요한 행정 사무이며 공무원의 급여를 각 동별로 구분 지급하고 원천징수업무를 처리하는 문제도 본청에서의 일괄지급 처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향

- 예산회계법상 예산의 전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 자금은 예산 내에서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 후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202(관서당경비)는 100만원이 남고 201(일반운영비)은 100만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예금잔고인 100만원은 시금고로 송금하여 반환하고, 다시 100만원을 송금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재 이러한 개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금의 예산 내 배정은 매월말 결산시 준수할 원칙이며 자금운용에 있어 반드시 세목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금의 배정은 세목별로 하되 그 사용은 총액관리하고 사후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세목별 집계하여 결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장부작성 등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진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구조 변경에 따른 인원감축은 행정력의 상실을 불러올 위험이 있으나, 절차 간소화에 의한 인력절감은 행정의 효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3. 전산 징수부 기록시 입력통제시스템 미비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세입 및 세외수입의 징수부는 영수필 통지서의 실물을 집계하여 작성된 일계표에 근거하여 전산입력되고 있습니다.
- 영수필 통지서 일계는 각 세목별로 연도별 구분되어 수납액이 집계되는데 이 내용이 빠짐없이 징수부에 전산입력되었는지 담당자 외에 상급자가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 특히 세입금 정정과 같은 수납일계상의 수정문제가 발생할 때 징수부가 적절히 수정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선방향

- 전산화된 사무환경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입력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이지만 입력 정확성의 유지는 행정의 문제입니다.
- 원시 증빙문서의 일계표와 당일 전산입력된 일계를 책임관리자가 반드시 검토하고 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징수부는 세입결산의 가장 중요한 장부이므로 수납일계의 확인과 함께 징수부 기록일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체계 구축이 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각 세목별로 납기경과 후 50일이 초과되면 미수납파일에서 전산독촉장을 출력하여 송부하고, 그래도 체납이 발생하면 별도의 체납대장이 관리되어 압류가 시행됩니다.
-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수별로 구청, 동에서 각 공무원에게 할당하여 징수독려하고 있으나, 5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의 경우 별도의 징수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개선방향

- 체납자 정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소액체납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세금의 납부는 액수의 많고 적음과 징수비용의 효율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이월액의 규모가 크며 세심한 주의가 요청

□ 현실태 및 문제점

○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등 차년도 이월사업비의 규모가 세출예산 총액에 대비하여 약 30%에 육박합니다.

연도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이월액	총세출액	구성비(%)
97	1,675	5,022	33.4
96	1,571	3,980	39.5
95	1,037	4,065	25.5

○ 단식부기시스템에서는 연도이월의 관리가 취약하게 되므로 이월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현황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 개선방향

○ 이월사업비에 대한 별도의 집계와 결산 등 이월액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분야결산검사 검토사항

□ 개 요

○ 현재 세출의 구조를 보면 자본지출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와 물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자본지출, 이전경비, 인건비의 순이며 특별회계는 자본지출과 보전재원의 순으로 그 비중이 높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인 건 비	543	10.8	485	16.2	58	2.9
물 건 비	581	11.6	350	11.7	231	11.4
이 전 경 비	760	15.1	514	17.1	246	12.2
자 본 지 출	2,407	47.9	1,422	47.4	985	48.7
응 자 및 출 자	13	0.3	10	0.3	3	0.2
보 전 재 원	538	10.7	44	1.5	494	24.4
내 부 거 래	171	3.4	171	5.7		-
예 비 비 및 기 타	9	0.2	4	0.1	5	0.2
합 계	8,022	100	3,000	100	2,022	100

○ 이전경비와 자본적지출의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등 각종 대민지원활동과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등 지원비가 약 737억원으로 23.3%의 비중이며 시설 및 자산취득비가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시설기반의 확충 못지 않게 주요 지원사업의 시행도 중요한데, 지나치게 보조금 지급과 시설건립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 기능별	보 상 금	차입금이자	기 타	민간또는 타단체지원	시설, 자산취득	계
이전경비	91	89	40	540	-	760
자본지출	-	-	-	197	2,210	2,407
합 계	91	89	40	737	2,210	3,167
구성비(%)	2.9	2.8	1.3	23.3	69.7	100

○ 일반회계의 세출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시설투자 및 재무활동비를 제외하면 인력운영비와 지원비 등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금 액	구 성 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630	21.0
사업운영비	사무용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142	4.7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 위원회운영, 의회비 등	32	1.1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지급입차료, 수선유지비	54	1.8
지원사업비	보상금, 민간이전, 타기관지원 등	650	21.7
재정운영비	지급이자	17	0.6
연구개발비		9	0.3
시설투자비	투자매입, 자산취득, 물품구매 등	1,224	40.8
재무활동비	대여금, 채무상환, 전출금 등	242	8.0
합	계	3,000	100

1. 공무원 인센티브제 미 실시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거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제도는 경직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사회 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96년 117,680천원, 97년 121,363천원을 계속하여 전액 불용 또는 삭감처리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특별상여수당 운용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편성내역					삭감(불용)사유 및 시기
	계	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96년	117,680	46,967	28,580	22,711	19,422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 예상으로 불용
97년	121,363	54,127	28,713	20,670	17,808	본청 불용, 구청 삭감 (3회 추경)
98년	128,272	57,805	28,819	22,153	18,495	1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

□ 개선방향

-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임.
- 공직사회 내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센티브제와 경쟁원리 도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환경을 창출해야 할 것임.

2. 각종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 현 황

민간보조예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편성내역			계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정액보조	
96년	7,221,597	312,042	210,540	7,744,179
97년	10,458,365	309,416	115,540	10,883,321

97. 민간보조예산의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	정액보조
국비	2,575,308	0	0
도비	1,725,729	0	0
시비	6,157,328	309,416	115,540
계	10,458,365	309,416	115,540

○ 각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민간경상보조의 방식으로 97년 약 108억원의 예산을 사용함.(96년 약 77억원)

□ 문제점

- 보조대상사업의 결정과 보조금액의 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정액보조의 경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보조기관과 액수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판단의 여지가 적지만, 임의보조와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대개 예년의 경우에 준해서 보조금이 결정되거나 타지방 자치단체의 사례를 주요한 판단근거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음.
- 보조금의 지급과 사후정산 등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보조금의 사용과 정산에 있어서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정산토록 하고, 보조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97년도 민주평통에 대한 보조금 7,000천원과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7,000천원의 경우 98년 4월 25일야 정산이 이뤄졌음.
-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부천시지역협의회가 주관한 97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랑의 어울 한마당에 5,000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행사일이 97년 10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이 모두 같은 날에 이뤄졌으며 심지어 보조금 정산도 같은 날에 이뤄지고 있음은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한 행정임.
- 오정구의 경우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보조결정이 97년 6월 17일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97년 4월 3일과 4일자 영수증이 정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고, 원미구의 경우에도 자연보호협의회에 대한 2,000천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97년 10월 20일자인데 97년 9월 30일에 이미 집행된 장비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정산하여 선집행 후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정산내역에 있어서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사용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보조금의 운용이 경직되어 있어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만들고 있다.
-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자부담의 비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자부담을 명시토록 하여 형식적인 계획서와 정산서가 만들어지는 예가 있음. 또한 자부담 사업의 경우에도 정산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유발함.
- 오정구 노인회의 전액 자부담사업으로 진행된 고양시 꽃박람회 관람(1,000천원)사업을 정산보고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임.
- 임의보조금의 결정과 정산보고는 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오정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정산보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함.
- 보조금 운용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
- 임의보조금 14,000천원으로 진행한 자전거축제는, 시의회에서 97년 예산안 심의시 자전거달리기 보상금으로 계상된 15,000천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10,000천원을 삭감함으로써 작은 규모로 치를 것을 결정한 사안인데, 이를 시에서 임의보조 형식으로 14,000천원을 보조하여 대규모로 사업을 치른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집행부 편의적으로 이용한 사례임. 실제 이 사업은 시 집행부에서 계획수립과 집행의 전과정에 관여하고 공무원을 동원함으로써 보조사업이 아닌 사실상 시 자체사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식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임.
-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사례
-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은 97년 280,633천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의 기능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부천시 도서관의 97년 장서구입비가 1억원인데 비하여 새마을이동문고의 장서구입비가 47,702천원

으로 부천시 도서관의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6년 55.9%(165,217천원)에서 97년에는 68.8%(193,124천원)에 이르는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도 시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동도서관의 업무는 별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 업무의 일부분으로 보아 시립도서관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을 높일 것으로 보임.

□ 개선방향

-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철저하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결정되어야 한다.
 - 악화되는 재정여건에서 보조금이 경직성 경비로 되지 않도록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임.
 - 연례적으로 관행화되어 온 보조사업과 보조기관에 대하여 일괄배정 또는 일정을 증액을 지양하고 예산형편과 사업목적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보조금의 정산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줄여야 한다.
 - 회계의 정산은 회계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지도와 정산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공무원들은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임.

3.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 현황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97년)

시 설 명	계	예 산 편 성 내 역		
		국 비	도 비	시 비
부천종합사회복지관	173,600	50,160	0	123,440
준의사회복지관	173,600	44,160	0	129,440
한라사회복지관	173,600	15,600	0	158,000
덕유사회복지관	153,600	15,600	0	138,000
상동사회복지관	153,600	44,160	0	109,440
장애인종합복지관	1,090,570	221,148	307,197	562,225
부천혜림원	960,724	476,410	327,359	156,955
중부노인종합복지회관	250,418	0	0	250,418
남부노인종합복지회관	143,470	0	0	143,470

- 부천시에서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복지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 현재는 위탁기관에서 복지관의 운영 및 예산편성과 정산업무를 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 예산 및 정산내역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각 복지관별로 장부정리 및 통장관리 등에 일관성이 없어 효과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문제점

- 현재의 복지관 운영방법은 복지관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부의 정리 및 통장관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 보조금의 정산내역 확인이 어렵게 되어 있고 현재의 지도점검 수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부정리에 있어서 지도점검 사항에 따라서 복지관별로 너무 단순하게 처리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관 장부 품질의 균일성이 낮음.
- 현재의 보조금 지원방식은 단순히 복지관의 면적규모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특색화나 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이 주어지지 않음.
-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
 - 관련법규에 의하면 판, 향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인건비의 여유예산을 재산조성비로 전용 지출하였고, 재산조성비의 주요지출내역은 컴퓨터 구입, 내부공사비 등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없던 지출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의문임.
 - 또한 사전승인없이 직책급 업무추진비, 주휴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4개 과목을 신설하여 타과목의 여유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장애인복지처리지침상 “특별한 경우 수당을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지급이었다고 하나 그 타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임의지급이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직급보조비의 경우 당초 예상에는 37명을 기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나 실제 급여대상상에는 32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급여와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출 후의 잉여예산은 타과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음.
 - 현금출납 담당자는 매일의 시제액을 일계표를 통해 기록, 관리하여 어느 특정일의 장부잔액과 통장 및 현금잔액을 일치시켜야 하나 일계표가 작성되지 않아 특정일의 현금보관액을 알 수 없었으며 장부와 통장잔액을 일치시킬 수 없었음. 또한 모든 예금은 단체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장 명의로 예금을 예치시킨 사례도 있었음.

□ 개선방향

-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교육의 강화

- 예산서 및 정산서의 검토작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임(복식부기의 채택을 적극 검토하여 전산화를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이를 위해서 단순 지도점검에 그치지 말고 복지관의 회계담당자와 책임자에 대하여 업무교육을 통해 장부 및 통장관리 등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반드시 필요한 업무인 일개표는 작성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현금출납부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사례 등)
- 자의적 예산전용의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전용, 정산에 있어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감시제도인 '지도점검'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회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보조금 사용에 대한 통제절차로 운영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정기적인 회계감사와 운영성과감사를 통한 보조금 차등지급방안 검토 필요
-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가 위탁하는 복지관 시설 168개소(종합사회복지관 75개소)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70여 명을 감사인원으로 하여 2년에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회계감사결과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관별 순위를 책정하고 다음년도 보조금 예산액을 차등 반영함으로써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전한 재정회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화된 사례가 있음.
- 부천시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복지관별로 현재의 일률적인 액수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운영실적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가능한 조건에서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4. 공원관리 및 가로화단 조경관리

- 공원관리 일환으로 조경사업 등 각종 시설비를 실시체계, 집행함에 있어 동일지역 또는 동일 사업성 시설사업을 여러 개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예산반영함으로써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 가로화단 조성공사 등을 하면서 조경식수 비수기인 8월중 사계장미 3,000주 등을 식재 사업함으로써 비현실적인 예산집행 사례가 있음.
- 공원관리와 녹지행정의 일원화로 부천시가 늘푸른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과 예산의 절감이 요구된다고 사료됨.

5. 일상경비 자금관리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 실·과, 동사무소에 전도하여 집행되고 있는 일상경비, 관서당

경비의 잔액과다 보유방지를 위해 원미구의 경우 상부기관 직원 1인이 업무연락 형식으로 각 동
의 자금을 지출증빙 회계 관련서류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 반납된 사례가 있어 이러한 행위는 예
산 회계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고 자금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사료됨.

□ 대 책

- 각 동 및 실·과·소의 일상경비 잔액이 과다하게 많음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기이 배정자금에 대하여 자금 관리 부서의 무절제한 취소 반납 조치는 있을 수 없으며,
차후 예산회계규칙에 반하는 취소 행위는 자금의 안정운용에 유의하고 모든 자료의 전도 회수 행위
는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제반 절차와 서류를 완비하여 세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보안등 보수 공사의 건

□ 현황 및 문제점

- 보안등은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등불로서 수시로 파손되는 보안등의 보수
공사 및 신설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나 보안등 신설은 각 구청에서 보수공사
는 각 동이 약 5백만원의 예산으로 연 1회, 2회 산발집행하고 있어 청소년, 중·고생의 야간 학습
후 귀가길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의 산발 집행으로 낭비성
이 있다고 사료됨.

□ 대 책

- 보안등 관리의 신속성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주관부서 또는 각 구청별로 전 지역의
보안등 체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유지관리 보수에 있어 단가 계약방식이나 총괄 관리 계
약을 통한 신속성 및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안등 유지관리보수에 관한 제
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7. 농촌지도사업

- 영농기술 발전을 위해 쌀증산 시책 등 신기술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벼 직파제배사업 등 6개 사업
에 민간보조금 4천만원을 투입 실시하고 이의 정산 및 평가 결과가 좋은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나
본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당해년도 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님에도 민간보조금 4천만원만 낭비시키
는 영농지도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범사업은 성공적으로 평가된 상기 사업
등에 대한 확대 보급실시 등 전 영농인에게 교육·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8. 자금의 효율적 운용

○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95, 96년도에 걸쳐 세입, 세출결산검사시 개선요구에 의해 관계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자소득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아직도 별첨과 같이 공원관리사업소 등의 월평균잔액이 132,000천원이나 잠자고 있는 등 각 보건소, 시민회관 등 사업소와 일부 동사무소의 일상경비가 휴면되고 있음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별첨]

97년도 현금출납현황

(공원관리사업소)

월별	내역	수령액	지출액	잔액	비고
계		2,637,357,020	2,512,861,990		월평균잔액 : 132,090,560 연말반납액 : 30,936,740
1월		170,340,000	97,263,630	73,076,370	
2월		143,513,000	152,094,280	64,495,090	
3월		294,401,000	147,369,000	205,614,090	
4월		169,921,020	86,287,770	208,010,910	
5월		169,600,000	309,322,570	68,288,340	
6월		161,060,000	186,664,510	42,683,830	
7월		265,910,000	171,730,100	136,863,730	
8월		215,760,000	215,952,180	137,122,990	
9월		258,760,000	316,689,150	79,193,840	
10월		365,115,000	191,610,050	252,698,790	
11월		249,231,000	236,157,760	265,772,030	
12월		173,746,000	388,251,310	51,266,720	
최종원			13,469,680		

9. 경영사업의 활성화

-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경영사업비 97억원이 휴면되고 있어 경영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부천시의 지형적 여건으로 보아 80만 시민의 휴식공간 부족과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의 휴식 및 오락 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 서울, 파천 등의 공원과 드림랜드 등과 같은 부천 환타지아 드림랜드 등을 도입 경영사업함으로써 시민은 물론 청소년,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휴식 오락 공간의 활용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경영사업화 등을 지향함으로써 경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사료됨.

10. 업무의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 시 행정전반에 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과감한 업무의 경영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민원업무, 국책사업 등 특별한 법적업무 이외의 각 실·과·소별 업무에 대해 세밀하고도 면밀한 재관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과감히 민영화 또는 민간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양과 인력이 동시에 구조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병행될 수 있다고 사료됨.

특히 보건소,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도서관 등 사업소의 경영진단은 물론 각 실·과·소별 업무 중 보건소의 방역 업무, 가로화단 관리, 보안등 관리, 보도블록관리 등 작은 업무라도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해 철저한 경영진단으로 민간 위탁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인력의 구조조정이 병행될 수 있다고 사료됨.

11. 낭비성 사업의 억제 : 관내 인도육교 건설사업의 경우

□ 현황 및 문제점

- 96년도 최초 사업계획은 4개 설치예정지(부천북부역 사거리, 자유시장 앞, 대성병원 앞, 부흥주유소 앞)에 총 예산 1,859,000,000원이었으나, 97년도에는 실시변경(설치예정지의 이전과 1개소 추가 및 설계변경)으로 총 예산이 2,876,39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총 사업비 2,776,080,000원이 지출됨.(98년 8월 현재)
-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 사전 준비가 소홀한 채로 추진된 전시행정으로,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된 측면이 많음.
- 착공시 집단 민원의 발생으로 시공업체와의 위약문제로 예정지가 무리하게 이전되고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시설추가(장애자 이용시설, 교통신호등 이설) 등으로 지출이 증가됨.

○ 특히 작동 이주단지 보도 육교의 경우에는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됨.

□ 개선방안

○ 예산편성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시의회에서도 당초 예산승인 후 실시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도육교 건설 예산현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비용액			집행잔액		
	계	96.예산 (97.사고)	97.예산 (98.명시)	계	96.예산 (97.사고)	97.예산 (98.명시)	계	96.예산 (97.사고)	97.예산 (98.명시)	계	96.예산 (97.사고)	97.예산 (98.명시)
계	2,876,390	1,566,390	1,310,000	2,772,034	1,205,644	1,205,644	97,977	97,977		2,016		2,016
북부역사거리 앞 (중흥중학교 앞)	1,201,478	781,478	420,000	1,085,768	304,290	304,290				115,710		115,710
대성병원 앞 (춘의레포츠공원)	269,323	269,323		555,010	285,687	285,687				△285,687		△285,687
교통신호등이설 (대성병원 앞)				128,850	12,850	12,850				△12,850		△12,850
자유시장 앞 (작동이주단지)	249,954	249,954		296,456	46,502	46,502	90,535	90,535		△137,037 (△90,536)		△137,037 (△90,535)
부흥유우소 앞 (새라이트 앞)	265,635	265,635		594,743	329,108	329,108	7,627	7,627		△336,735 (△7,627)		△336,735 (△7,627)
수주초등학교 앞	240,000		240,000	231,253	231,253	231,253				25,839		25,839
장애자 이용시설	650,000		650,000							650,000		650,000

12.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자금반납업무

- 현재 부천시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경우에 자금 반납시 반납결의서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음.
- 자금반납시 자금반납 기관에서는 반납결의서를 사용하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경우에는 자금반납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따라서 향후 자금반납시 지출결의서를 이용하여야 함.

13. 공공요금의 자동이체

- 구청·동사무소의 경우에 공공요금의 자동이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요금의 자동이체는 공공요금의 납부자연에 따른 가산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체계적으로 전 구청·동사무소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14. 공기업의 자금관리

□ 현 황

- 일반회계의 경우 자금배정을 수시로 하고 자금의 운용에 주의를 집중하여 자금관리 부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자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공기업 자금의 1997년도 월말 평균잔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정기적금	정기예금	금고우대	신 탁	공공예금	계
상수도공기업	4,250	143	21,901	26,013	545	52,852
하수도공기업	9,458	-	-	-	1,897	11,355
공영개발사업소	2,600	-	50,675	3,300	3,353	59,928

□ 문 제 점

- 공기업의 자금 중에서 공공예금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수익성이 없는 자금이며 자금배정 업무절차의 개선 및 자금의 집중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는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됨.

□ 개선방안

- 자금관리에 있어서 매월 자금소요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배정시 자금 소요 시기에 맞추어 배정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5. 불용예산의 검토

□ 예산항목별 불용비율

구 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대비 불용비율 (%)	불용총액 대비율 (%)
본 청	계	317,158,250,220	11,819,211,370	5.9	56.7
	일반행정	32,439,666,320	1,772,445,420	5.5	8.5
	사회개발	190,941,067,430	1,775,732,800	3.5	32.5
	경제개발	85,929,820,470	2,582,010,450	3.0	12.4
	민방위비	841,677,000	175,872,540	20.9	0.8
	지원및기타경비	7,006,019,000	513,150,160	7.3	2.5
원미구	계	44,180,212,000	2,585,251,650	5.9	12.4
	일반행정	21,615,844,430	1,146,185,510	5.3	5.5
	사회개발	12,311,640,000	814,543,270	6.6	3.9
	경제개발	7,520,357,000	535,168,030	7.1	2.6
	민방위비	334,785,000	89,354,840	26.7	0.4
소사구	계	37,984,779,800	2,124,884,820	5.6	10.2
	일반행정	23,026,012,130	725,669,670	3.2	3.5
	사회개발	8,744,490,180	568,707,360	6.5	2.7
	경제개발	6,017,269,490	767,710,430	12.8	3.4
	민방위비	197,008,000	62,797,360	31.9	0.3
오정구	계	28,563,776,800	4,326,376,900	15.1	20.7
	일반행정	16,808,361,900	3,116,022,810	18.5	14.9
	사회개발	6,158,984,000	460,418,790	7.5	2.2
	경제개발	5,468,328,000	705,025,060	12.9	3.4
	민방위비	128,103,000	44,910,240	35.1	0.2
부천시 전 체	계	299,986,895,260	20,855,724,740	7.0	100.0
	일반행정	96,287,470,350	6,760,323,410	7.0	32.4
	사회개발	218,156,181,610	8,619,402,220	4.0	41.3
	경제개발	104,935,774,960	4,589,913,970	4.4	22.0
	민방위비	1,501,573,000	372,934,980	24.8	1.8
	지원및기타경비	7,006,019,000	513,150,160	7.3	2.5

□ 검토사항

○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7% 정도인 209억원 정도이며 이는 전기의 10% 389억원보다 180억원 정도의 불용액 감소가 이루어진 것이며, 사업비 성격이 강한 경제개발비의 불용액 비율이 예산대비 4.4%로 전기의 14.0%에 비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

전체 불용액의 경우 본청이 약 56.7%로 전기의 72.1%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며, 본청의 경우 개선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사회개발비의 불용액에 대한 개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예산편성시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오정구의 경우 일반행정비의 불용액이 많아서 3개 구청 중 불용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예산편성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에 불용가능한 부분에 대한 감액예산 편성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16. 청소용역 및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계약방식의 개선

□ 현 황

○ 청소용역의 경우 부천시 내의 청소업무 용역계약을 6개 업체와 맺고 있으며 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음.

- (주)위생공사 : 향후 2년 간 비목별 소요경비를 예측하여 책정한 후 예측소요경비의 10%를 이윤으로 하여 총 금액을 정액으로 확정 후 분할지급하는 방식.

- 강서실업(주) 등 기타 5개 업체 : 외부용역에 의해 산정된 원가에 따라 생활쓰레기 대행처리수수료의 경우 세대별 단가금액을, 운반비의 경우 쓰레기 톤당 금액을 적용하여 매월 지급.

○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의 경우 (주)대우와 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음.

- (주)대우가 소각장 운영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용의 10%를 이윤으로 가산하여 매월 정산 지급.

- (주)대우는 1년 단위로 발생경비에 대한 증빙확인을 산동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아님)

□ 문제점

○ (주)위생공사와의 계약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예측경비를 기준으로 10%의 이익을 보장하므로 예측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할 유인성이 강함.

- 예측치가 실제 발생치와 다를 경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수정하여야 함에도 정산의 개념이 계약상 없음.

○ (주)대우의 계약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실제 발생경비의 10%를 이윤으로 보장하므로 실제 발생경비를 과다하게 발생시킬 유인성이 강함.

-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실제 발생경비에 대한 증빙이 있다는 확인서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 발생경비의 크기가 적정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

- 이것은 감사를 통하여서도 적발할 수 없는 통제 곤란한 계약방법상의 문제라고 판단됨.

□ 개선방안

- (주)위생공사의 경우 다른 5개 업체와 동일하게 세대별 단가 및 쓰레기 톤당 원가에 의해 매월 정산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외부용역의 원가조사 결과서상 (주)위생공사의 청소구역인 일반주택의 경우 세대별 단가는 4,925 원이며 톤당 75,661원으로 되어 있는 바,
- 외부용역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음.
- (주)대우의 경우 실제 폐기물처리량에 따른 톤당 원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폐기물처리 톤당 원가는 외부용역에 의해 산정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실제의 처리량에 따라 이윤이 결정되는 바 최대조업도를 유지시키는 유인책이 되며,
- 계약금액도 처리량에 의해 고정되어 있으므로 경상비 등의 과다지출에 따른 낭비 원인도 사전에 제거시킬 수 있음.

17. 동사무소, 보건소 및 과 경비 운영관련 미비사항

□ 개 요

- 결산검사 기간중 동사무소 및 과 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보완이 필요한 사례 및 개선권고안

- 기관업무추진비
 - 지출결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지출증빙이 비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음.
 - 매월의 지출증빙철의 완전성을 상급자가 검토·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특수활동비
 - 예산배정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의 형식적인 증빙을 첨부한 후 자금 인출한 사례(실제 지출은 여러 건에 걸쳐 발생함)가 있었음.
 - 실제 소요자금 필요시 그에 대한 금액만큼 자금인출하고, 지출증빙도 실제 발생액대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여비교통비
 - 예산편성 지침상 여비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의 기본활동 및 현장지도·감독 수행에 따른 관련 출장명령부를 정리하고 실제 지도·감독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부분의 경우 출장명령부만 형식적으로 운영, 유지되고 있을 뿐 실제 출장시간의 기록 등은 관

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일부의 경우 계단위별로 인원을 안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음.
- 시간의수당 지급과 동일하게 출장시간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모든 자금의 지급은 계좌이체가 바람직한 바, 여비지급 또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급양비

- 지출증빙을 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첨부한 사례가 있었고, 거래명세표 등에 거래처 관련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도 없는 백지의 증빙도 있었음.
-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공란의 영수증만을 받아 직접 금액을 기록하여 지출증빙으로 철하는 사례가 많으나 예산에 대한 집행검증의 중요한 원시자료이므로 반드시 거래처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일지상의 근무시간과 지급내역서상의 지급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됨.(과다 지급 2명, 과소지급 1명)
- 단순히 집계상의 착오로 보이나 사소한 오류의 발견은 전체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보다 철저한 계수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현금출납부와 통장잔액의 불일치

- 현금출납부의 기록 에러로 판명되었으나 매일의 시제액과 장부금액의 일치확인인 일일결산업무의 첫단계인 바, 1건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자금배정 전의 자금집행

- 경비집행시 자금배정 전에 경비를 선집행하여 자금배정잔액이 마이너스가 난 사례가 있었음.

○ 소요자금 예측의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자금청구 및 반납

- 모 보건소의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자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지출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청구한 후 몇달 후 반납한 사례가 있었음.
- 이러한 불필요한 자금의 이동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는 별개로 하더라도,
-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의 효과적인 통제절차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임.

○ 과다한 자금보유의 비효율성에 대한 담당자의 무관심

- 과다한 자금보유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듯이 보이며,
- 특히, 일부 과 및 보건소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판단하건대 자기 부서의 통장잔액이 많은 것이 시 전체를 위해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자기 부서를 위하여서는 나쁘지 않다는 시각이 있었고,
- 어떤 담당자는 자금잔액이 많다거나 적다거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산 및 자금잔액 내 사용인지에 대하여만 관심을 보임.
- 세목별 월말 자금보유 한도를 정하고 위반시 적절한 Penalty를 부과하는 방법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